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60

2020년 9월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외 42명
나. 발의일자 : 2020년 7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14일
라. 상정결과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9월 2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서윤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용자의 이용금지 사항의 범위를 변경함(안 제6조제1호)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서울시 정무부시장 방침에 의해 수립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에 의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의결('20.4.2.) 사항으로 서울시 인권담당관이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중 동 조례에 해당하는 것을 개정하기 위하여 서윤기 의원 외 42명이 발의하였음.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 소속 안광석 의원(강북4,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동 조례의 개정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지난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반영하려는 것임.

○ 서울시는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과 2017년 2차례의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을 시정의 기본이념으로 한 '인권도시 정책'을 추진하였음.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은 시 주요 정책 추진시 인권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권영향평가 수행과정을 통해 행정내부 인권에 대한 지식·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2019년 4월 “인권영향평가[1]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① 자치법규, ②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시설물 및 단위사업 등, ③ 그 밖에 인권위원회가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인권영향 평가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전면 시행하였음.

○ 2020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제도 결과로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하기와 같이 9개 분야에서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 96개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였음.

□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Ⅰ. 차별 및 인권침해	Ⅱ.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Ⅲ. 시민참여보장
개선점	인권친화적 행정기반 구축	문화권,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참여(참정)권, 평등권
인권침해 (제한)분야	1.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 2.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조항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상위법에 근거한 시설 이용 감면(면제)의 올바른 적용여부) 5. 반환권 제약(공공시설 이용 사용 시 반환조항이 미비한 경우) 6. 구제권 제약(과태료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여부 및 구제절차 포함여부)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8.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1) 인권영향평가(HRIA)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 법령, 계획, 정책,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 평가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은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협조 공문을 각 실국에 배포한 바, 동 조례의 경우 제6조의 조문이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분야에 포함된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시설관리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통일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2020년 6월 16일 동 조례를 수정가결하여 대부분의 내용을 인권담당관의 권고대로 수정하였으나, 제6조제2호의 내용은 삭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발의된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6조제2호의 내용이 동 조 제1호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다만, 안 제6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람’이라는 단어는 그 사전적 의미가 ‘연극, 영화, 운동경기, 미술품 따위를 구경함’으로 시민청의 이용자를 수동적으로 ‘보는’ 행위에 제한하므로

실제로 시민청의 이용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2].

2) 우리 위원회는 이미 2020년 6월 16일 심사(제295회 정례회)를 통해 의안번호 1493호「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조제1호의 ‘관람’을 ‘이용’으로 수정가결한 바 있으므로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동 조례를 소관하고 있는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도 제6조제1호의 ‘관람’을 ‘이용’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 안 제6조의 수정제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제 안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금지한다.	제6조(이용의 금지) ---------- ---------- 사람은 ----------.	제6조(이용의 금지) (개정안과 같음)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1.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 제6조제1호 중 '관람'은 그 사전적 의미가 '연극, 영화, 운동경기, 미술품 따위를 구경함'으로 시민청의 이용자를 수동적으로 '보는' 행위에 제한하여 실제로 시민청의 이용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으로 변경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6조제1호의 시민청 이용을 금지하는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을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1호)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660

제안년월일 : 2020년 9월 2일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 제6조제1호 중 '관람'은 그 사전적 의미가 '연극, 영화, 운동경기, 미술품 따위를 구경함'으로 시민청의 이용자를 수동적으로 '보는' 행위에 제한하여 실제로 시민청의 이용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으로 변경함.

2.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6조제1호의 시민청 이용을 금지하는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을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호 중 “관람”을 “이용”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금지한다.	제6조(이용의 금지) ---------- ---------- 사람은 ----------.	제6조(이용의 금지) (개정안과 같음)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1.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자는”을 “사람을”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